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 (장정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44
----------	-------

발의연월일 : 2018. 3. 13.

발의자 : 장정숙 · 정동영 · 황주홍

박지원 · 조배숙 · 김경진

이용주 · 천정배 · 김종회

유성엽 · 장병완 · 김광수

박주현 · 최경환(평)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마사회는 승마 수요의 확대를 위하여 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및 승마시설 설치·개보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승마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안전사고의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승마시설 및 안전사고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0호 및 제6조).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전단 중 “말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를 “정기적으로 말사업자, 승마시설 및 승마안전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계작성을”을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항에 따른 <u>통계작성을 위하여</u>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말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 <u>통계작성 및 실태조사</u> 를----- ----- ----- ----- -----. ----- ----- ----- -----.</p>
--	--